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0
----------	------

제출일자 : 2015. 5.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실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나. 현행 위임사무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법규의 입법근거와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임권자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제외)에 관한 아래 사항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나. 경제과의 읍·면 위임사무 삭제

다. 위임사무 중 개정된 근거법령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4. 10. ~ 4.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임용권  나. 호봉획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li> <li>•같은 조례 제7조</li> <li>•같은 조례 제8조</li> <li>•같은 조례 제9조</li> <li>•같은 조례 제21조</li> <li>•같은 조례 제22조</li> <li>•같은 조례 제23조</li> <li>•같은 조례 제27조</li> </ul>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li> </ul>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li> </ul>
세 무 과	1	지방세기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기본법 제63조</li> <li>같은법시행령 제41조</li> </ul>
징 수 과	1	가.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기본법 제5조</li> </ul>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li> <li>•같은조례 제17조</li> </ul>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주민지원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li> <li>•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li> <li>•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li> <li>•같은법 시행령 제13조</li> </ul>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li> <li>•같은법 제21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li> </ul>
사회복지과	1	기초노령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노령연금법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li> <li>•같은법시행규칙제9조</li> <li>•같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li> <li>•같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8조</li> <li>•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li> </ul>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가.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나. 소유자, 용도 및 연료·용수사용량 조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설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도시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안전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농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교통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의회 사무과	1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자치 행정과	1	<a href="#">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a>	
		가.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가. 임용권  나. 호봉확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2	<a href="#">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a>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행정 지원과	1	(생략)	(생략)	자치 행정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세무과	1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다.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지방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 제5조	세무과	1	지방세기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u>&lt;삭 제&gt;</u>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u>&lt;삭 제&gt;</u>
		<신 설>	<신 설>			정수과	1
회계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민 지원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요구 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라. 의료급여증의 변경 확인·정정·증회수등 마.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 수합 제출 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 제출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주민 지원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u>&lt;삭 제&gt;</u>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u>자격확인</u> ·정정·증회수등 라.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 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같은법시행령 제13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2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라. 수급자 연건 확인 조사	·같은법 제23조			(삭제)	(삭제)
		마. 차상위계층 관리 및 책정·상징·변경 요구	·같은법 제24조			(삭제)	(삭제)
사 회 복지과	1	(생략)	(생략)	사 회 복지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경 제 지원과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나. 사용료부과 징수 및 감면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 지시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제10조, 제12조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같은 조례 제8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환경과	1	(생략)	(생략)	환경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 소 위생과	1	(생략)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청 소 위생과	1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생략)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건설과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나.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제41조	건설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 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삭제>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삭제>
도 시 시설과	1	(생략)	(생략)	도시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치 수 방재과	1	(생략)	(생략)	안 전 방재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공 원 녹지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공 원 녹지과	1	<a href="#">산림보호법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권한</a>	
		가. 입산신고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u>			가. 입산 <u>허가</u>	<u>·산림보호법 제15조</u>
		나. 불놓기 허가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u>			나. 불놓기 허가	<u>·산림보호법 제34조</u>
		다. 취사신고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u>			<u>&lt;삭 제&gt;</u>	<u>&lt;삭 제&gt;</u>
		라. 산불예방 및 진화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u>	다. 산불예방 및 진화	<u>·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u>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통과	1	(생략)	(생략)	교통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